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84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이학영・임호선・박정현

진선미 • 전재수 • 한민수

문금주・정준호・조 국

정혜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,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한 경우 그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. 「식품위생법」의 경우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자가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 및 식중독의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또는 그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

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69조제2호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56조제3항(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

제170조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169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	
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	
의 벌금에 처한다.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2의2. 제56조제3항(제166조의2
	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
	다)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
	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
	<u>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</u>
	<u>한 자</u>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17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170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	
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	
의 벌금에 처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56조제3항(제166조의2에서	<u><삭 제></u>
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	
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	
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	
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	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